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09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으로는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바,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